食品營業과 PL(製造物 責任)法의 內容分析 考察

朴 奉 相/ 韓國衛生法學會 會長

머 리 말

앞으로 새政府에서는 "製造物責任法"을 立法施行하게 된다고 公表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製造物責任法을 立法施行하게 될 때에 食品營業과의 聯關性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理解를 하고 이에 對備한 食品衛生管理를 행하지 않으면 아니될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現在 "製造物責任法(案)"의 內容이 立法豫告되지 아니한 段階이지만, 憲法上保障된 國民의 基本權인 "健康權" 確保를 圖謀하고 消費者인 國民의 健康이나 生命에 支障을 招來하는 것을 防止하고자 하는 立法趣旨에서 이러한 制度를 施行하게 된다면 食品營業을 管理하는 側面에서는 그 內容을 충분히 把握하고 이에 對應하는 戰略이 없어서는 向後 營業管理를 행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어려운 試練에 逢着하게 될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아직 그 立法內容이 밝혀지지 않은 時點이지만 언젠가는 施行될 이 問題를 把握하기 위하여 日本에서 旣히 施行되고 있는 "製造物責任法"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檢討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와같은 立法이 施行될 때를 對備한 營業戰略을 構想하는데 接近하고자 한다.

1. 食品營業과 PL法

日本에서는 1994年 6月(平成 6年)에 "製造物責任法" (즉, PL法)이 公布되고 다음해인 1995年(平成 7年) 7月부터 同法律이 施行 되었다.

이 法律에서 "製造物"이란 무엇인가? 왜 이와같은 PL法이 必要한 것인가? PL法이란 어떠한 內容의 法律이며, 이 法律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變하는 것인가? 그리고 PL法에 따라 食品營業은 어떠한 對策을 講究할 必要가 있는 것인가? 등 多角的으로 그 內容을 把握하지 않으면 아니될 段階에 到達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製造物責任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있는 삶의 주변에는 多種多樣한 種類의 製品들이 大量으로 生産되어 消費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製品에 問題가 있을 때에는 事故가 發生하게 되고 그 事故가 發生

하게 되면 結果的으로 그것을 使用한 消費者는 뜻하지 아니한 被害를 입게되는 경우가 있다.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科學技術의 發展에 따라 製品이나 그 製品의 製造工程은 대단히 高度化, 複雜化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事故가 發生할 경우에는 심각한 被害가 發生할 可能性은 過去에 비하여 대단히 높아졌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事故가 發生할 경우에는 이에따른 被害者가 그 製品을 供給한 企業에 대하여 治療費, 慰藉料, 休業補償, 修理費用등을 支給하여 줄것을 要求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에 發生하는 損害賠償責任을 "製造物責任"이라고 하는 英文名「PRODUCT LIABILITY」의 頭文字를 따서 "PL"이라고 略稱하고 있다. 이것을 좀더 專門的으로 定義

하게 되면「製造物責任이라고 함은 製品의 缺陷이 原因이 되어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被害가 發生할 경우에는 그 製品을 供給한 企業이 負擔(특별히) 하는 法律上의 損害賠償責任이다」라고 할 수 있다.

3. PL法의 必要性

(1) 民法에서의 問題點

왜 PL法이라고 하는 새로운 法律이 必要한 것일까? 民法에 있어서의 損害賠償法理는「過失責任原則」에 그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損害賠償을 認定받기 위해서는 加害者의 過失(그와 같은 結果가 發生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適正한 豫防策을 講究하지 아니하였다는 注意義務違反)이 있었다는 것이 必要한 것이다. 그래서 PL事故에 있어서 製造者의 責任을 追求하기 위하여서는 被害者인 消費者는 그 製造業者가 어떠한 過失이 있었는가를 具體的으로 밝혀야 할(證明할) 義務가 있는것이라 하겠다(被害者가 製造業者로부터 直接 製品을 購入한 경우에는 兩者間에 賣買契約이 存在하기 때문에 契約責任을 追求하는 것은 可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같은 事例는 꼭 一般的인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製造業者의 過失을 證明하는 義務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逆으로 表現하면 製造業者의 過失을 證明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같은 請求를 認定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와같은 證明이 困難하게 되면 證明義務를 지니고 있는 被害者側은 裁判上 不利한 地位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서 製造業者의 過失을 具體的으로 證明을 하는 作業은 그렇게 손쉽게 행할수 있는 간단한 作業은 아닌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現代社會에 있어서 製品의 製造工程은 대단히 高度化·複雜化 되어있고 나아가 製品의 製造에 대한 情報(證據)는 모든 企業의 內部에(企業의 秘密로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的인 消費者는 그와같은 情報를 入手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님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專門的知識을 갖고 있지 아니한 被害者가 製品의 製造工程을 熟知하고 난 다음에 그 企業의 過失을 證明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典型的인 PL訴訟을 想定한 경우 原

告(1人의 消費者)와 被告(大企業)의 사이에는 製品에 관한 專門知識, 資金力, 人的資源등 여러면에서 크나큰 差異가 있는 것은 當然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事情을 背景으로 하여 現代社會에서 일어나고 있는 PL事故를 오래전부터 制定·施行되고 있는 民法의 規定에만 適用하여 解決하려고 하는 것이 果然 妥當한 것인가의 疑問이 오늘날 現實的으로 指摘되지 않을 수 없는 段階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2) 缺陷責任의 採用에 있어서의 證明負擔의 輕減

그래서 어떠한 內容의 法律을 制定함으로써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것일까? 그 回答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缺陷責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缺陷責任」이라고 함은 「缺陷을 責任要件으로 하는 無過失責任」이라고 바꾸어 말을 할 수가 있다.

어떤 製品에 缺陷이 있었기 때문에 事故가 發生하게 된다면 過失의 有無에는 關係없이 그 製品을 供給한 企業에 대하여 그 責任을 물으려고 한다.

이와같은 생각의 바탕은, 被害者는

① 製品에 缺陷이 있었다는 것과

② 그 缺陷이 原因이 되어 事故가 發生하였다는 것을 證明하게 되면 製造業者의 過失의 證明이 不要하게 되기 때문에 證明負擔이 輕減하게 되는 것이다. 歐美諸國에서 制定·施行되고 있는 PL法에 있어서도 이 缺陷責任이라고 하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一般的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日本의 PL法에서도 이와같은 歐美先進國의 생각과 같이 缺陷責任을 採用하고 있다고 하겠다.

4. 食品分野에 있어서 製造物責任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民法의 根據下에서 問題點을 一般的인 觀點에서 說明을 하였으나, 이와같은 問題點은 食品分野에 있어서도 꼭같이 適用되는 것일까 하는 觀點에 대하여는 食品分野에 있어서의 特有의 PL事情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그 事情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PL法 制定의 目的중 하나는 「消費者가 (契約에 關係없이) 製造業者의 責任을 追求하는 경우의 證明負擔의 輕減」에 있다고 하는 것은 旣히 說明한 바와 같다.

그러나 例를들면 飮食店營業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製造業者가 곧 販賣業者인 경우가 普通의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에 被害者는 賣買契約에 基因하여 契約責任을 追求하는 것이 可能한 것이다.

日本에서는 從來부터 食品을 取扱하는 販賣者에게 高度의 注意義務가 要求되고 있었고, 契約責任을 追求하는 경우에는 過失의 存在에 관한 證明責任이 轉換되어 있었다 (加害者側이 스스로 過失이 없었다는 것을 證明할 수 없는 限 그 責任은 認定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飮食店營業者에게는 旣히 엄한 責任이 課하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消費者는 直接 販賣를 하지 아니한 食品製造者에 대하여서도 日本의 法院에서는 民法의 規定에 따라 보다더 彈力的인 判斷을 하고 있으며 「人身에 크나큰 영향을 갖는 食品의 製造者에게는 高度의 嚴格하고 무거운 注意義務가 있는 것이며, 缺陷이 있는 食品을 製造한 者에게는 그의 過失이 事實上 강하게 推定된다」고 하여 過失의 存在에 관한 證明責任을 轉換함에 따라 被害者를 保護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法院의 判斷傾向은 食品衛生法에 基因한 調査에 의한 原因, 因果關係의 究明率이 높음에 따라 食品關聯 PL訴訟에 있어서의 原告(被害者)의 勝訴率은 대단히 높은 것이었으며, 따라서 食品事故에 있어서의 被害者는 製造業者의 責任을 追求하는 경우의 어려움은 많이 輕減되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와같은 見地에서 볼때 日本에서는 從來부터 民法의 規定에 따르고 있었고 旣히 事實上의 無過失責任에 接近하는 엄한 責任이 課하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 PL法 施行에 따른 影響

前述한 바와 같이 食品分野에 있어서는

事實上 民法의 規定에서 無過失의 責任이 採用되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PL法이 施行된 이후 食品業界는 아무런 變化가 發生하지 않은 것일까? 이것은 보는 觀點에 따라서 樂觀的 與否가 決定될 것이다.

(1) PL法이 施行되어짐에 따라 企業에 대한 損害賠償請求가 容易하게 된다고 하는 認識이 消費者間에 急速히 擴散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와같은 것이 消費者의 損害賠償請求 "마인드"를 보다더 높게하는 效果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從來에는 被害者가 "크레임"을 提起하지 아니한 事例를 顯在化하여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現在 日本에서는 被害를 받은 消費者 가운데 實際 "크레임"을 提起하는 사람은 3내지 5割 程度에 멈추고 있다고하는 調査結果가 있다. 이와같은 數字는 食品分野에 있어서 꼭맞게 符合된다고 하는 것은 明白하지가 않지만, 相當數의 "크레임" 豫備軍이 存在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PL法施行과 더불어 水面上에 떠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2) PL問題의 關心度가 높아짐에 따라 消費者는 製品이 要求하는 安全性의 水準이 착실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食品自體뿐만 아니라 그 包裝, 容量 혹은 表示등 從來 消費者가 그리높은 關心을 갖고 있지 아니한 分野에 있어서도 그 要求는 高度化될 것이고 그 結果 企業은 그 責任을 負擔하여야 할 領域이 擴大될 것이라는 것을 豫想하게 된다(이것은 社會가 要求하는 安全性 水準의 高度化에 比例하여 缺陷槪念이 擴大되고 企業責任이 嚴格化=크레임件數의 增加를 招來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어쨌든 PL法을 立法施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企業責任의 嚴格化의 象徵이고 PL法의 對象與否를 不問하고 製品이나 서비스를 供給하는 모든 企業에 대한 크레임件數는 增加되어질 것이고, 따라서 食品業界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企業의 責任이 嚴格化되어진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할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6. PL法의 포인트

다음으로는 PL法의 內容중 食品과 關係가 깊은 條文을 中心으로 分析 理解하고자 한다.

(1) 어떠한 食品이 對象이 되는가?(第2條1項)

製造物이라 함은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製造加工된 食品이 對象이 되는 것이며, 未加工의 農林水産物같은 것은 對象外라고 할 수 있다.

加工食品과 未加工食品과의 限界는 대단히 어려운 問題다. 즉, 「加熱, 調味, 塩漬, 燻製, 粉挽, 搾汁」등은 「製造 또는 加工」에 해당되고 단순한 切斷, 冷凍, 冷藏, 乾燥등은 基本的으로 「製造 加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解釋하고 있다.

그러나 生鮮초밥과 같은 것은(單純히 切斷되어 진 것이 아니고) 調理 加工된 食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結果的으로는 加工의 경우에 따라 判斷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2) 어떠한 企業이 對象이 되는가?(第2條3項)

飮食店, 레스토랑, 加工食品메이커등의 食品(最終製品, 原材料를 不問하고)을 製造 또는 加工한 企業이나 輸入業者등이 PL法의 對象이 된다.

(3) 어떤 경우에 그 責任이 發生하는가?(第2條2項, 第3條)

製品의 缺陷이 原因이 되어 事故가 發生한 경우에 責任이 發生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旣히 밝힌 바와 같다.

缺陷이라고 하는 것은 「當該 製造物이 通常 갖춰야할 安全性을 缺하고 있을 것」이라고 定義를 하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製造物의 特性」, 「通常豫見되는 使用形態」, 「當該 製造物을 引渡한 時期」등을 考慮하여 個個의 事例에 따라 判斷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즉, 食品이 汚染되어 있거나, 異物이 混入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PL法에 의한 責任이 發生되는 것이 아니고 消費者의 生命, 身體, 財産등 實際的으로 被害(모든 擴大損害)가 發生하였다는 것이 必要한 것이다.

(4) 어떤 경우에 責任이 免除되는 것일까?(第4條)

製造業者등은 다음과 같은 事項이 證明될 경우에는 그 責任은 免除된다.

(가) 당해 製品을 引渡할 때 入手可能한 最高의 科學技術의 水準에 의하여서는 당해 製造物에 그의 缺陷이 있었는 것을 認識할 수가 없을 것(모든 開發危險의 抗辯)

(나) 部品, 原材料의 缺陷이 完成品의 製造業者로부터의 設計에 관한 指示에 따라 發生하고 그 缺陷이 發生한데 대한 部品·原材料製造業者는 過失이 없을 것(이 경우에 당해 部品·製造業者의 責任은 免除된다)

(5) 損害賠償의 請求는 언제까지 可能한가?(第5條)

PL法의 根據下에서의 損害賠償請求權은 被害者가 損害 및 賠償義務者를 알고 난 때로부터 3年의 사이에 賠償의 請求를 하지 않으면 時效가 되어 없어지게 된다.

또한 그의 製造業者등이 製品을 引渡한 때로부터 10年이 經過한 때에는 위와같이 賠償請求는 할 수 없다.

다만, 潛伏期間이 經過되어 被害가 發生할 수 있는 製品事故에 대하여서는 製品引渡時를 基點으로 하지 아니하고 損害發生日字로부터 10年間의 責任期間이 認定되어 있다.

(6) 民法과의 關係(第6條)

PL法은 民法의 特別法이므로 PL法에서 規定이 없는 事項 즉, 例를 들면 慰藉料, 損害賠償의 方法, 過失相殺등에 대하여는 民法의 規定이 適用된다.

또한 食品事故에 대하여는 從來와 같이 義務不履行責任이나 不法行爲責任에 따라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가 있는 것이다. 基本的으로는 被害者에게 有利하게 制定된 PL法에 따라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 것이다.

7. 食品分野에 있어서의 PL事故

具體的으로 食品分野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PL事故라고 할 수 있는가?

日本에서는 代表的인 事例로서는 微生物을 原因으로 하는 食中毒, 製造工程의 過程에서 異物의 混入에 의한 事故, 包裝, 容器등의 不備에 따른 事故등을 생각할 수가 있다.

參考로 過去 日本에서 있었던 實際事例에서 다투었던 주된 食品關聯事故의 例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以外에도 食品關聯事故는 訴訟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많이 發生하였던 것이다.

(1) 砒素밀크事件

"大手乳業메이커"가 製造한 "드라이밀크"에 使用된 品質安定劑에 砒素가 混入된 것이 原因이 되어 西日本의 各府縣에서 人工營養의 乳幼兒사이에 重症 身體障害가 發生하였다.

이 事件은 被害者에게 恒久救濟事業을 행하는 것을 條件으로 하는 和解가 成立되어 現在에 이르기까지 同乳業메이커가 被害者의 治療看護, 生活保障등에 所要되는 모든 經費를 負擔하고 있는 것이다.

(2) 米糠油 PCB混入事件

米糠油에 그의 脫臭工程에 따른 熱媒體로써 使用된 PCB가 混入된 것이 原因이 되어 西日本을 中心으로 廣域에 걸쳐 수많은 被害者(皮膚障害·內臟疾患·神經疾患등)가 發生하였다.

製造메이커등으로부터 支拂된 損害賠償金의 總額은 150億엔을 上廻하고 있다.

(3) 卵豆腐事件

살모넬라에 汚染된 液卵을 材料로 하여 製造된 卵豆腐가 原因이 되어 食中毒事件이 發生, 崎阜縣 大垣市를 中心으로 415名의 被害者가 發生하였다.

第1審判決에서는 卵豆腐의 製造者·都賣業者·小賣業者에 대하여 約 1,900萬엔의 支拂命令이 있었고 그후 抗訴審에서 和解가 成立되었다.

(4) 辛子蓬根事件

熊本縣의 食品製造會社가 製造한 辛子蓬根이 原因이 되어 보쯔리누스菌 食中毒이 發生하여 廣域에 걸쳐 36名의 被害者(그중 11名은 死亡)가 發生하였다.

同社는 資本金 500萬엔의 中小企業이기 때문에 弔慰金·和解金으로 約 3,400萬엔을 支拂한 후 倒産하였다.

(註) 이와같은 事件以外에도 裁判으로 다투었던 事例는 많으며 그 有名한 鰒魚中毒事件도 있었다.

8. 企業의 PL對策

日本의 食品業界에 있어서는 從來부터 「微生物汚染」과 「異物混入」의 防止를 目的으로 하는 徹底한 品質管理對策이 講究되어 왔으며 그와같은 企業側의 努力에 따라 高品質 製品의 供給이 實現되었다고 할 수 있다.

食品分野에 있어서 PL事故豫防策의 本質은 어디까지나 品質管理에 歸着한다고 하는 것은 再言을 不要한다.

그리고 過去보다 더 한층 自主的衛生管理를 행하여 나갈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今後에는 그와같은 努力에 더하여 容器, 包裝, 取扱說明, 注意書등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觀點으로 製品의 安全性의 向上·搬送·流通·販賣過程에 關與하는 關聯企業도 한데 뭉쳐 全社的인 事故豫防對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또한 특히 食品關聯 PL事故에 있어서는 廣域的 多數의 被害者가 發生하게 되고 巨額의 損害賠償請求가 일어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하는 特徵이 顯著하기 때문에 企業으로서는 事故豫防策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不幸하게 事故가 發生한 경우에 企業이 입는 損失을 最少化하기 위한 對策도 並行하여 講究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그의 核心이 될 수 있는 것이 PL保險이나 共濟로 代表되는 賠償履行確保措置인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이 適正한 賠償履行確保措置를 講究한다는 것은 企業管理의 觀點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迅速한 被害者救濟를 實現한다고 하는 크나큰 社會的 意義도 存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社團法人 日本食品衛生協會에서는 昭和47年에 食品營業賠償共濟制度가 發足되어 現在에 이르기까지 會員企業의 經營의 安定化와 迅速한 被害者救濟를 實現하기 위한 有效한 對策으로의 機能을 다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共濟制度는 食品事故가 發生한 경우에 被害者의 損害賠償金, 訴訟의 경우 裁判費用, 辯護士費用과 또한 食品事故가 發生하여 休業이 계속될 때의 過失利益(休業保障) 등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L法으로 象徵되고 있는 企業責任嚴格化의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그 重要性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企業이 適正한 PL對策을 講究한다고 하는 것은 自社製品의 信賴性, 安全性을 높임과 同時에 萬一의 경우 自社가 社會的 責任을 다하기 위한 體制整備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製品의 安全性을 높혀갈 企業의 努力이 消費者의 多樣化, 高度化에 따른 諸事情을 如何히 製品에 反映하여 가는가 하는 것도 퍽 重要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事故豫防과 迅速한 被害者救濟를 目的으로 하는 企業의 努力은 今後 消費者등으로부터 높은 評價를 받을 것이며, 나아가 企業에 있어서도 크나큰 成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이 생각할 때 企業이 適正한 PL對策을 講究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單純한 PL法의 對應策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나큰 企業經營上의 意義도 함께 存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企業의 PL對策이 多方面으로부터 높은 關心을 모우고 있는 理由라고도 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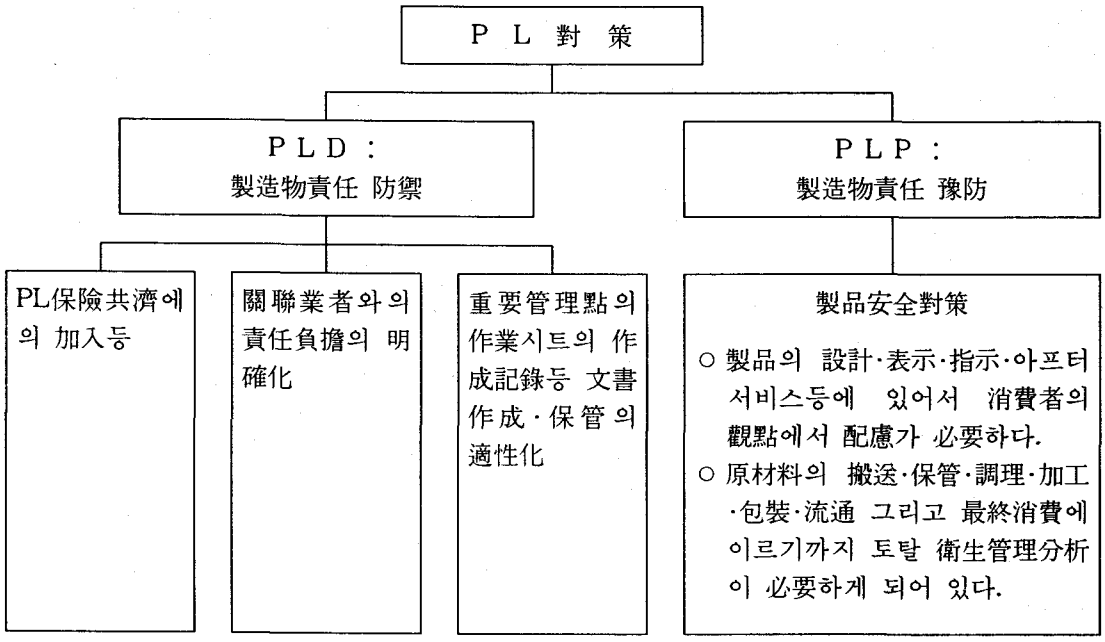

9. Q & A

(1) Q : 製造販賣된 製品이 事故가 發生하였을 때 適用되는 法律은 民法과 PL法이라고 한다면 이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 責任要件에 관한 基本的인 見地가 바뀌어지고 있다. 이에대한 포인트는 PL法에 있어서는 過失이 없다고 할지라도 製品에 缺陷이 있으면, 責任을 지는 無過失責任(缺陷責任)의 事項을 導入한 것이며 이것이 새로운 責任要件인 것이다. 「缺陷」의 槪念을 消費者의 觀點에서 보는 것이며, 나아가 企業責任을 嚴格化하여 가고 있다는 점이다.

勿論 「缺陷」에는 製品自體에 內在하는 製造上, 設計上의 缺陷뿐이 아니고 安全上의 指示·注意·警告表示에 관한 缺陷도 包含되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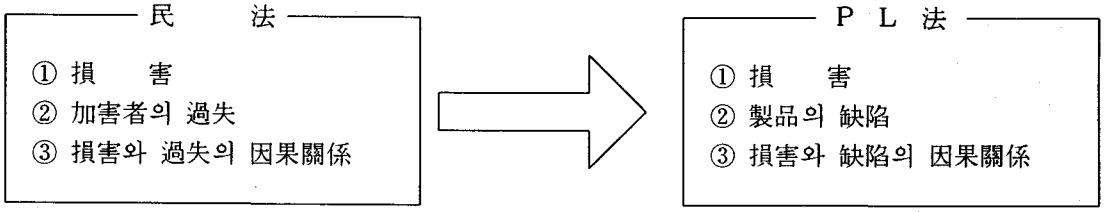

(2) Q : PL法에는 損害賠償金의 上限·下限의 規定은 있는 것인가? 또한 對象이 되는 損害의 範圍는?

A : PL法에서는 特別히 賠償金의 限度額등에 대하여서는 決定되어 있지 않다. 同法 第3條에서는 「製造物의 缺陷에 의하여 他人의 生命·身體 또는 財產을 侵害하였을 때에는 이에따라 發生하는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다만, 그 損害가 當該 製造物에 局限하여 發生하였을 때에는 이에대한 限度는 없다고 할 것이다.

本條文(第3條)에 있는「그의 損害가 當該製造物에 局限하여 發生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制限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製品이 缺陷이 있어서 그것이 原因이 되어 身體 또는 財産에 侵害가 있는등 모든 擴大損害가 發生하지 않는 경우는 PL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는 할 수 없다고 하는 意味를 지니고 있다.

缺陷製品自體의 損害에 대하여는 契約責任의 側面에서 補完되기 때문에,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賠償하여야 할 損害의 範圍에 包含하는 것은 適當하지 않다는 見地에서 除外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Q : 食品事故가 發生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A : 被害者로부터 크레임對應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適切한 初期對應」인 것이다. 結果的으로「初期對應이 모든 것을 決定한다」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크레임의 提起가 있게되면 于先 正確한 事故狀況의 把握과 關聯情報의 收集에 努力함과 同時에 誠實하게 對應하는 마음가짐이 퍽 重要하다고 할 것이다.

確認하여야 할 事項으로서는

① 製品名, 製造番號등
② 事故發生日, 發生場所
③ 被害者의 住所, 姓名
④ 事故의 槪要
⑤ 入院治療의 有無
⑥ 因果關係의 確認
⑦ 保健官署와의 連絡有無등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自社製品과의 因果關係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被害擴散防止를 위하여 卽刻適正한 對應措置를 취하고 對話를 통하여 解決하고자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事故內容이 明白하게 因果關係가 없다고 判斷될 때에는 明確하게 그 可否를 通報하여야 할 것이며 애매모호한 態度는 오히려 問題解決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즉, 最初부터「當社에는 一切責任이 없다」고 하는 딱딱한 態度를 취하는 것은 결코 對策이라 할 수 없으며, 相對方과 對等한 立場에 서서 誠實하게 對應하는 것이 圓滑한 解決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4) Q : PL對策의 하나로서 食品의 注意, 警告表示등이 重要하다. 어떠한 것에 重點的으로 注意를 더하여야 할 것인가?

A : 食品의 事故防止에 重點을 두고 各製品의 特性을 考慮하여 取扱上의 注意, 警告에 관한 情報를 利用者가 보기 쉬운 곳에 알기쉽게 記載할 必要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法律·地方自治團體의 條例·規格基準·關聯團體의 自主基準등을 充分히 把握하여 거기에 適合한 表示를 하는 것이 基本的인 것이며 또한 使用者의 立場에 서서 具體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表示를 행하려고 하는 努力이 重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注意, 警告表示의 本來의 目的은 使用者에 대하여 製品의 誤使用이나 內在하는 危險性에 대하여 表示로써 注意, 警告를 함으로써 使用者가 製品을 適正하게 使用하게 한다든지 危險을 回避하게 하여 被害의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는데 그 目的이 있을 것이다.

本來 食品은 安全하고 無害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食品事故등의 危害가 많다고 判斷되는 것에 대하여는 安易한 注意警告만 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危害를 除去하는 것을 檢討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5) Q : 賠償履行確保의 方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A : 食品에 관한 苦情은 거의 製品自體의 瑕疵에 關係가 있다.

이와같은 경우는 주로 製品交換이나 返品등으로 解決될 수 있으나, 食中毒事故같은 것은 同一한 原因으로 多數, 廣域에 걸쳐 危害의 發生이 우려되기 때문에 賠償金도 高額化의 傾向이 있고 企業의 存續 그 自體에도 威脅을 느낄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現在 食品事故에 關係되는 賠償履行確保로서는 社團法人 日本食品衛生協會의 食品

營業賠償共濟制度를 비롯하여 民間의 保險會社나 業種別 團體에 의한 保險·共濟制度 혹은 基金같은 것이 있다.

앞으로 消費者 保護意識이 높아짐에 따라 企業도 從來보다 한층 엄한 責任追求가 있을 것이 豫想된다.

그러므로 企業에서도 賠償履行確保의 措置는 PL對策에 있어서 重要한 地位를 점하게 되고 被害者에게 迅速하고 確實한 救濟도 이루어지게될 것이다.

그리고 確實하고 效率的인 賠償履行確保措置가 漸次 重要하게 다루어질 것이 豫想된다.

10. 製造物責任法(平成 6年 法律 第85號)

第1條(目的) 이 法律은 製造物의 缺陷에 의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被害가 發生한 경우, 製造業등의 損害賠償의 責任에 대하여 規定함으로써 被害者의 保護를 圖謀하고, 나아가 國民生活의 安定向上과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이 法律에서 「製造物」이라 함은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②이 法律에서 「缺陷」이라 함은 當該 製造物의 特性, 그의 通常豫見되는 使用形態, 그 製造者등이 當該 製造物을 引渡한 時期 기타 當該 製造物에 事情을 考慮하는 등 當該 製造物이 通常 갖추어야할 安全性을 缺하고 있음을 말한다.

③이 法律에서 「製造業者등」이라 함은 다음 各號 1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1. 當該 製造物을 業으로서 製造加工 또는 輸入한 者(以下 製造業者라 칭한다)
2. 스스로 當該 製造物의 製造業者로서 當該 製造物에 그의 姓名, 商號, 商標, 其他의 表示(以下 「姓名등의 表示」라 함)를 한 者 또는 當該 製造物에 그의 製造業者로 誤認하게끔 姓名등의 表示를 한 者
3. 前號에 揭記하는 者 以外 當該 製造物의 製造, 加工, 輸入 또는 販賣를 하는 形態, 其他의 事情에서 보아 當該 製造物에 그 實質的인 製造業者로 認定할 수 있는 姓名등의 表示를 한 者

第3條(製造物責任) 製造業者등은 그 製造, 加工, 輸入 또는 前條第3項第2號 또는 第3號의 姓名등의 表示를 한 製造物로서, 그 引渡한 것의 缺陷에 의하여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侵害한 때에는 이에따라 發生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4條(免責事由) 前條의 경우에 있어서 製造業者등은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事項을 證明하였을 때에는 同條에 規定하는 賠償責任이 없다.

1. 當該 製造物을 그의 製造業者등이 引渡한 때에 科學 또는 技術에 관한 知見에 따라서는 當該 製造物에 그의 缺陷이 있는 것을 認識할 수가 없었을 때
2. 當該 製造物이 他의 製造物의 部分 또는 原料로써 使用된 경우에 있어서 그 缺陷이 當該 他의 製造物의 製造業者가 행한 設計에 관한 指示에 따라서 發生하거나 그의 缺陷이 發生하였을 때의 過失이 없을 때

第5條(期間의 制限) ①第3條의 規定하는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의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賠償義務者를 안 때로부터 3年間 행하지 않을 때에는 時效에 따라 消滅된다. 그의 製造業者등이 當該 製造物을 引渡한 때로부터 10年을 經過한 경우도 또한 같다.

②前項後段의 期間은 身體에 蓄積된 경우에 사람의 健康을 害하게 하는 物質에 의한 損害 또는 一定의 潛伏期間이 經過한 후에 症狀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損害가 發生한 때로부터 起算한다.

第6條(民法의 適用)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製造業者등의 損害賠償의 責任에 대하여서는 이 法律의 決定에 의하는 外에 民法의 規定에 따른다.

附 則

(施行期日등)이 法律은 公布한 날로부터 起算하여 1年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하며, 이 法律의 施行後에 그의 製造業者등이 引渡한 製造物에 대하여 適用한다.